

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(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)

*출처 : 한국예술인복지재단

예술 활동 증명 기준 (공개 발표된 예술활동)

문화예술 분야	세부 기준
문학	<p>※최근 5년 동안의 활동 기준임</p> <p>▶직업별기준 시인.수필가 : 5편 이상의 시(시조, 동시 포함),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소설가 : 1편(단편의 경우 3편) 이상의 소설(동화 포함), 평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희곡작가 : 1편 이상의 희곡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(* 희곡작가는 3년 동안의 활동) 비평가 : 3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공통 : 1권 이상의 문학 작품집 출간</p> <p>▶세부기준 1권 : 국제표준도서번호(ISBN)를 부여받은 서적 문예지 : 국제표준도서번호(ISBN) 부여, 결호 없이 3년 이상 발간된 (문학)월간지, 또는 5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격월간·계간·반년간 종합 문예지/잡지, 장르별 문예지, 혹은 3년 이상 된 일간지 및 30년 이상된 문학전문 주간지 아동문학, 청소년문학 분야 신청 경우 : 순수 창작 저술 활동(위인전, 명작 재구성, 학습 도서 미포함)이 주가 되고 교육·교양도서의 저술 활동이 그에 못 미치는 경우, 등단 여부, 교양·교육도서 기획출판 중에도 작가의 창의성이 포함된 도서의 저술 활동 등 작가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확인</p> <p>▶자료 표지/발행정보면/목차 또는 작품수록면 첨부 - 작품 발표일, 작품명 및 발표 매체,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- 예명 활동의 경우,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첨부</p>
미술, 사진, 건축	<p>※최근 5년 동안의 활동 기준임</p> <p>▶직업별기준 작가 : 5회 이상 미술·사진·건축 전시회에 참여하였거나 1회 이상 개인전 개최, 또는 5회 이상 관련 매체 등에 작품을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작품집 발표 비평가 : 5회 이상 미술·사진·건축 비평을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 비평집을 출간 기획, 기술지원 스태프 : 3회 (예술감독의 경우 1회) 이상의 미술·사진·건축 전시에 참여 (* 전시기획자는 3년 동안의 활동)</p> <p>▶세부기준 건축분야 '시공'은 예술활동 미포함되며 전통 건축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구분 하지 않고 인정</p>

문화예술 분야	세부 기준
	<p>▶자료</p> <p>전시 : 도록, 리플릿 표지/내지 사진 촬영, 스캔 파일 첨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인전은 대관계약서 혹은 대관료 지급 내역 등 추가 첨부 - 웹이미지 첨부시 자료 보완 요청될 수 있음 - 전시기간, 전시명 및 주최 기관,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<p>작품(비평)집 : 표지/발행정보면/목차 또는 작품수록면 첨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작품 발표일, 작품명 및 발표 매체,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- 예명 활동의 경우,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첨부
음악, 국악	<p>※최근 3년 동안의 활동 기준임</p> <p>▶직업별기준</p> <p>가창자, 연주자 아래 중 택 1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편 이상의 음악·국악 공연 혹은 텔레비전·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- 1장 이상의 음반 출반 <p>작사(곡), 편곡가 : 3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(곡) 또는 편곡하여 음반이나 음악·국악 공연을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작품집 출간</p> <p>비평가 : 3편 이상의 음악·국악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음악·국악 비평집 출간</p> <p>지휘자 : 음악·국악 공연에서 3회 이상 지휘</p> <p>기획, 기술지원 스태프 : 3편 이상 음악·국악 공연 참여하였거나 3장 이상의 음반에 참여</p> <p>▶세부기준</p> <p>1편 : 개별 독립된 공연을 지칭하며, 동일 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공연으로 인정함</p> <p>1장 : 최소 3곡 이상의 악곡이 포함된 음반 (디지털 음반 포함, 반주 음악은 1곡으로 미인정)</p> <p>* 유흥업소 공연은 음악 공연으로 미인정</p> <p>▶자료</p> <p>공연 : 포스터, 리플릿 표지/내지, 언론매체 기사, 출연계약서 중 택1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연일, 공연명, 참여자명 확인되는 자료 - 예명 활동의 경우,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저작권협회 재적증명서 등 첨부 - 언론매체 기사의 경우 URL주소 포함 <p>음반 : 앨범 커버/발매정보면/크레딧 및 저작권 등록 자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음반명, 발매일, 참여자명 확인되는 자료 - 예명 활동의 경우,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저작권협회 재적증명서 등 첨부 <p>악곡(음원) : 스트리밍서비스 URL 및 저작권 등록 자료</p>

문화예술 분야	세부 기준
무용	<p>※최근 3년 동안의 활동 기준임</p> <p>▶직업별기준 무용수 : 3편 이상의 무용 공연 출연 안무가 : 1회 이상 무용 공연 안무 담당 비평가 : 3편 이상의 무용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무용 비평집 출간 기획, 기술지원 : 스태프 3편 이상 무용 공연 참여</p> <p>▶세부기준 1권 : 개별 독립된 공연을 지칭하며, 동일 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공연으로 인정함</p> <p>▶자료 포스터, 리플릿 표지/내지, 언론매체 기사, 출연계약서 중 택1 - 공연일, 공연명, 참여자명이 확인되는 자료 - 예명 활동의 경우,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첨부 - 언론매체 기사의 경우 URL주소 포함</p>
연극	<p>※최근 3년 동안의 활동 기준임</p> <p>▶직업별기준 배우 : 3편 이상의 연극 공연 출연 * 장기공연 출연 배우의 경우 12주 이상 연속하여 총 36회 이상 출연하면 '3년 동안 3편'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, 8주 이상 연속하여 총 24회 이상 출연하면 '3년 동안 2편'의 활동 실적으로 인정 연출가 : 1회 이상 연극 공연 연출 극작가 : 1편 이상의 희곡을 연극 공연이나 관련 잡지 등을 통해 발표 비평가 : 3편 이상의 연극 비평을 관련 잡지 등을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연극 비평집 출간 기획, 기술지원 스태프 : 3편 이상의 연극 공연 참여</p> <p>▶세부기준 1권 : 개별 독립된 공연을 지칭하며, 동일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공연으로 인정</p> <p>▶자료 표지/발행정보면/목차 또는 작품수록면 첨부 중 택1 - 공연일, 공연명, 참여자명이 확인되는 자료 - 예명 활동의 경우,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첨부 - 언론매체 기사의 경우 URL주소 포함 - 장기공연 출연 배우의 경우 장기 출연 확인 가능한 계약서, 지급 통장 내역 첨부</p>

문화예술 분야	세부 기준
영화	<p>▶직업별기준</p> <p>배우 : 최근 3년 동안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3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</p> <p>감독 : 최근 5년 동안 (단편영화 경우 3년)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상영된 영화 1회 이상 연출</p> <p>시나리오작가 :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나리오를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통해 발표</p> <p>비평가 :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을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영화 비평집을 출간</p> <p>기획, 기술지원 스태프 : 최근 5년 동안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2편 이상의 영화 참여</p> <p>▶세부기준</p> <p>* 관련법규 영화상영관 / 저작권법 제2조제36호 상영등급분류 /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 배우활동으로 미인정</p> <p>▶자료</p> <p>출연(참여)확인서와 소득 자료/ 계약서와 소득 자료 중 택1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작품명, 상영일 및 제작사,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- 소득 자료는 통장사본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- 통장사본 첨부 경우 지급처(제작사), 지급일시, 계좌소유주 정보 확인 필요 - 모바일뱅킹 거래내역은 증명자료로 확인이 어려움 - 예명 활동의 경우,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첨부
연예	<p>※최근 3년 동안의 활동 기준임</p> <p>▶직업별기준</p> <p>배우, 개그맨, MC, 프로듀서 등 : 3편 이상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드라마, 음악·코미디·예능·교양 프로그램 등에 1편 이상 연출 또는 진행</p> <p>* 장편드라마 출연배우의 경우 : 16회 이상 고정 출연은 '3년 동안 3편 이상'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</p> <p>패션모델 : 3회 이상 패션쇼에 출연하였거나 3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</p> <p>공연자 :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 출연</p> <p>작가 : 1편 이상의 대본을 드라마·예능·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발표 (* 드라마 중 연속극의 경우 최근 5년 동안의 활동)</p> <p>비평가 : 3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집을 출간</p> <p>기획, 기술지원 스태프 : 3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(최근 5년) 혹은 연예 공연에 참여(최근 3년)</p>

문화예술 분야	세부 기준
	<p>▶세부기준 1편 : 개별 독립된 작품을 지칭 * 패션쇼와 광고 분야의 경우 모델 활동만 인정</p> <p>▶자료 등급확인서/출연확인서와 소득 자료 또는 계약서와 소득 자료, 관련 홈페이지 URL 중 택1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작품명, 방영일 및 제작사,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- 소득 자료는 통장사본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- 통장사본 첨부 경우 지급처(영화제작사), 지급일시, 계좌소유주 정보 확인 필요 - 예명 활동의 경우,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, 출연확인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첨부
만화	<p>※최근 5년 동안의 활동 기준임</p> <p>▶직업별기준 만화가 아래 중 택1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권 이상의 만화 작품집을 출간하였거나,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6개월 이상 연재 혹은 5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발표하여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 - 5회 이상 만화 전시회에 작품 전시 <p>비평가 : 5편 이상의 만화 비평을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만화 비평집 출간 기획, 기술지원 스태프 : 3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참여하거나 3회 이상의 전시 참여 (*기술지원 스태프는 2년 이상 만화 작품 제작에 참여한 경우에 한함)</p> <p>▶세부기준 1권 : 국제표준도서번호(ISBN) 부여된 독립된 서적</p> <p>▶자료 작품(만화,비평)집 : 도서 표지/발행정보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작품 발표일, 작품명,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<p>연재 작품 : 연재 페이지와 계약서 또는 소득 자료 (통장사본 등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재 매체, 작품 발표일, 작품명,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- 통장사본 첨부 경우 지급처(출판사), 지급일시, 계좌소유주 정보 확인 필요 <p>전시 : 도록, 리플릿 표지/내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시 기간, 전시명 및 주최 기관,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- 예명 활동의 경우,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첨부